

	<h2>사회봉사규정</h2>	규정번호	3-6-2
		제정일자	2012.06.01.
		개정일자	2020.09.01.
		개정차수	3차
		소관부서	대외협력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의 인재상인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인 양성을 위한 사회봉사(이하 "봉사"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 및 신청) ① 봉사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 중 희망하여 지원하는 자로 한다.

② 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봉사담당부서에서 정하는 기간에 요구하는 양식을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.

제3조(봉사기관 및 배정) ① 봉사자는 본인의 소질을 발휘하여 봉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봉사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② 봉사기관 배정은 봉사자가 희망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.

③ 봉사자가 희망하는 대상이 없을 때에는 봉사담당부서에서 배정할 수 있다.

제4조(활동) ① 봉사자는 자율적으로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② 봉사자는 개인 또는 단체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5조(확인) 봉사담당부서는 봉사활동 확인을 위하여 봉사자에게 봉사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지도) 봉사를 지도하는 지도교수 또는 봉사 담당자는 봉사기관을 방문하여 봉사활동 내용을 지도할 수 있다.

제7조(사회봉사교과목 운영) ① 매 학년도 2학기에 공통개설학과에서 개설한다.

② 수강희망자는 공통개설학과 중 희망하는 학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사회봉사교과목 수강 학생은 수강 학기에 기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.

④ 기본교육은 2시간 이상으로 하며, 봉사 활동시간에 포함한다.

⑤ 학점인정범위는 다음 각호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.

1. 입학일로부터 수강 학기까지 봉사 시간 30시간 이상(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이내)인 경우

2. 한국중앙자원봉사활동센터([www.1365.go.kr](http://www.1365.go.kr))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([www.vms.or.kr](http://www.vms.or.kr))에 등록된 봉사 기관에서의 봉사

⑥ 휴학 기간의 봉사는 인정하지 않는다.

⑦ 성적평가는 봉사 시간에 대하여 Pass 또는 Non Pass로 한다.

제8조(재정) 봉사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 교비예산과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.

제9조(사회봉사운영위원회) ①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'사회봉사운영위원회'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.

1.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
2. 사회봉사 주요사업 결정 및 수정 자문

3. 사회봉사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

4. 사회봉사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

③ 위원회는 사회봉사센터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사회봉사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사회봉사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